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314-135	게재일	2019.03.08 15:41
제 목	"헤어지자고 했다가 데이트 폭행당해 팔이 으스러졌습니다"		
U R L	<a href="https://www.insight.co.kr/news/215132">https://www.insight.co.kr/news/215132</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경고'로 결정한다.		
이 유	<p>1. 인사이트의 해당 기사는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제보 내용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당하고, 기절했는데도 계속 발에 밟혔습니다"로 시작해 남자친구에게 맞아 눈 핏줄이 터지고 팔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졌다고 제보했다는 내용이다.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가해자는 귀가조치됐다는 것 등 사건 자체를 서술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제보자가 밝힌 피해 당시 상황과 사진들을 경찰 조서처럼 상세하게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선정성을 과장한 것이라고 본다.</p> <p>2. 위 기사는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0항(선정보도의 제한)을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0항 (선정보도의 제한)		
<p><b>2019년 3월 14일</b> <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 <b>위원장 이민규</b> <b>위 원 김용, 김완성, 박종수, 이성규, 장하용</b></p>			

# 심 의 결 정 문

심의번호	INC-190314-136	게재일	2019.03.08 18:22
제 목	아는 여동생 술먹이고 모텔 데려가 '뇌출혈' 직전까지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		
U R L	<a href="https://www.insight.co.kr/news/214972">https://www.insight.co.kr/news/214972</a>		
주 문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이 기사를 '경고'로 결정한다.		
이 유	<p>1. 인사이트의 해당 기사는 아는 오빠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당한 데 이어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을 제보받았다며 피해 당시 상황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A씨의 목을 조르며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A씨는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 거부 의사를 정확히 밝히며 몸부림쳤다. 그러나 B씨의 행동은 멈출 줄 몰랐다. B씨는 A씨의 핸드폰을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을 50여 차례 때렸다. 그리고 A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등 폭력상황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은 선정성이 과장된 것이라고 본다.</p> <p>2. 위 기사는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규정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0항(선정보도의 제한)을 어겼다고 보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		
적용조항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제10항 (선정보도의 제한)		
<p><b>2019년 3월 14일</b> <b>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위원회</b> <b>위원장 이민규</b> <b>위 원 김용, 김완성, 박종수, 이성규, 장하용</b></p>			